

알바하다 다쳤는데 내 돈으로 치료하라고요?

- 치킨과 뜨거운 싸움 중인 B 씨 이야기 -



“ 군 제대 후 복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B 씨는
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.
튀김기 앞에서 치킨을 튀기던 중, 기름이 B 씨의 팔을 덮쳐
화상을 입고 말았는데요.
며칠간 입원 치료 후 가게에 찾아가 치료비 이야기를 꺼내자
사장님은 4대 보험이 안 되어 있다며 산재처리가
불가능하다고 합니다.

사장님 저 일하다가
다쳐서 그러는데 산재처리 좀...

우리 가게는 4대 보험 안 되어있어.
미안한데 산재처리 안 돼.





“아르바이트생은
산재 적용이
안 되는 건가요?”

정규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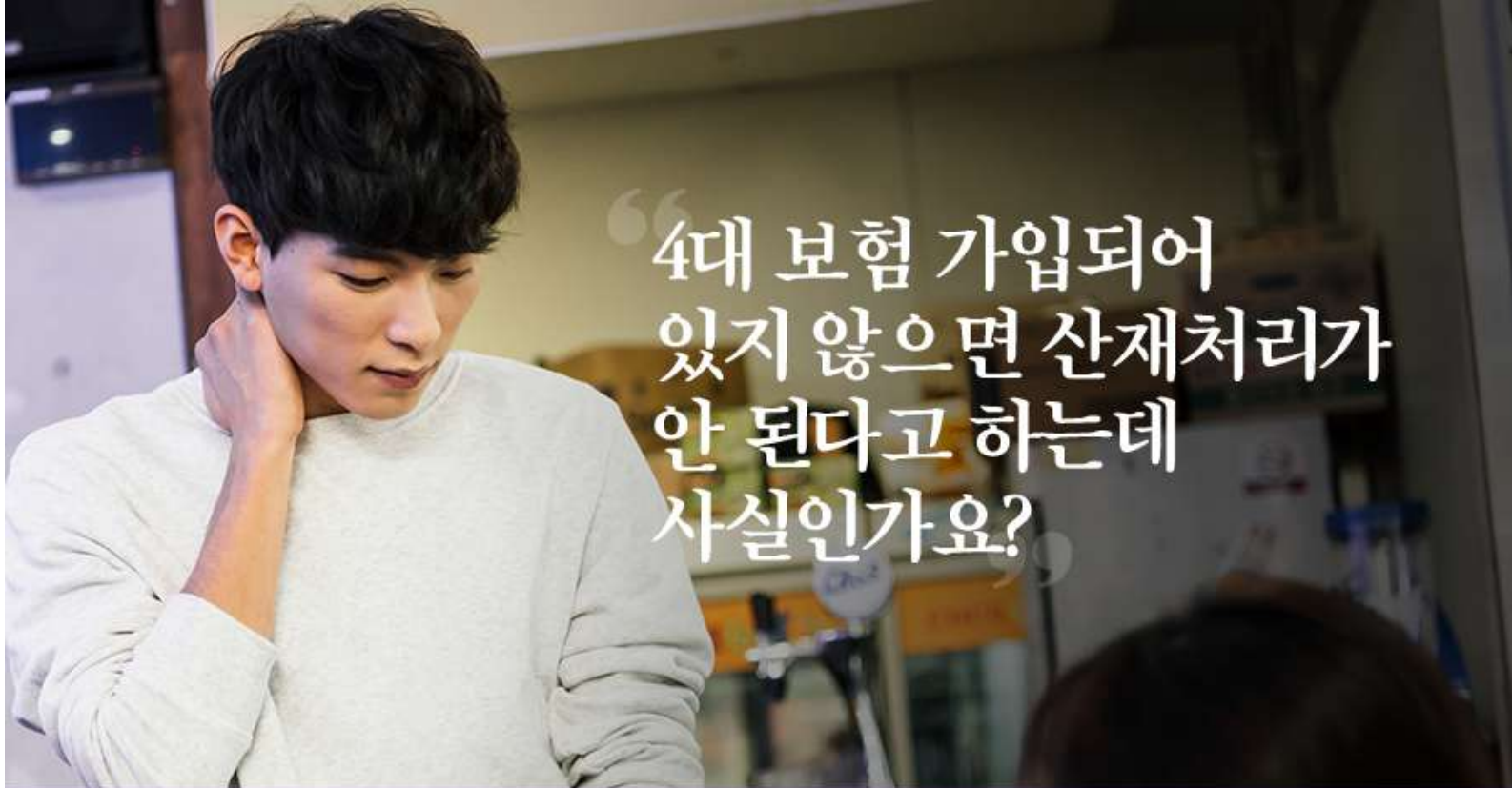
장기·단기
계약직

아르바이트

외국인
노동자

일용직
임시직

모두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산재 보상은 **‘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
사람은 누구나’** 받을 수 있어요.



“4대 보험 가입되어
있지 않으면 산재처리가
안 된다고 하는데
사실인가요?”

**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
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라면
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.**

*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
상시근로자 1인이상의 사업장
(단, 5인미만의 비법인 농업, 임업, 어업, 수렵업 제외)



제 부주의로 인한
사고이기 때문에 산재가
아니라고 합니다.

근로자의 과실 유무에 무관하게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
다만, 근로자의 고의·자해행위나 범죄행위에 의한 것은
산재로 보지 않습니다.

근로자가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
업무상 사고, 질병, 출퇴근재해에 대해
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
산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여 승인
받으면 치료비, 휴업급여, 장해급여
등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
산재 보험급여



치료비



휴업급여
(요양기간 중 평균
임금의 70%)



장해급여
(치료 후 신체 등에
장해가 있는 경우)



유족급여, 장의비,
재활급여 등

사회생활의 첫 시작 아르바이트.
아르바이트생의 산재보상도
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!



더 자세한 내용은?



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

고용노동부 누리집 <http://www.moel.go.kr>

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-0075

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<http://www.kcomwel.or.kr>